

개별소비세 [외교관 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승인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반출자)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전화번호						
	⑤ 주소(본점 소재지)									
	⑥ 반출 장소			⑦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격	⑫ 단가	⑬ 가격	⑭ 과세표준	⑮ 세율	⑯ 세액	⑰ 비고	
반입자	⑱ 성명(대표자)			⑲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⑳ 상호(법인명)			㉑ 사업자등록번호						
	㉒ 주소 (본점 소재지)									
㉓ 반입 장소										
㉔ 반출 예정일			년 월 일							
㉕ 승인신청 사유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㉖ 그 밖의 참고사항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19조제 호에 따라 면세 반출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세무서장 인 세관장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없음	

(뒤 쪽)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외 교 관 면 세	해당 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무 조 건 면 세	1.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면세 신청에 필요한 서류 3.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기증받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기증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3호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수용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